##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3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권칠승·민병덕·송옥주

임호선 · 김태선 · 이기헌

박해철 · 임미애 · 안태준

소병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,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. 시행령에서는 도료,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·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, 수은,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 향족탄화수소(PAHs)가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 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.

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)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(안 제23조 등).

법률 제 호

###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도료,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·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(이하 이 조에서 "도료 등"이라 한다)에 들어있는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함량
- 2. 도료 등에서 방출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) 및 폼알데하이 드(Formaldehyde)의 방출량
- 3. 도료 등에 함유되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함량
- 4.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환경유 해인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	제23조(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
관리)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	관리) ①
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	
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	
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, 어	
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	
관리기준(이하 "환경안전관리	
기준"이라 한다)을 <u>대통령령으</u>	<u>다음 각</u>
로 정하여야 한다.	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대통령
	<u>령으로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도료,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
	·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(이
	하 이 조에서 "도료 등"이라
	한다)에 들어있는 카드뮴, 수
	은 및 6가크로뮴의 함량
<u>&lt;신 설&gt;</u>	2. 도료 등에서 방출하는 다환
	<u>방향족탄화수소(PAHs) 및 폼</u>
	알데하이드(Formaldehyde)의
	<u>방출량</u>
<u>&lt;신 설&gt;</u>	3. 도료 등에 함유되어 있는 프
	탈레이트류의 함량
<u>&lt;신 설&gt;</u>	4.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을 보
	호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

	환경유해인자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